

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접수일자및제출자 : 1997. 6. 5 (박규호의원외6인)
- 나. 회 부 일 자 : 1997. 6. 5.
- 다. 상 정 일 자 : 1997. 6. 24 (제59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상정의결)

2. 제안설명의요지

가. 제안이유

'97. 1. 1 기획실의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함

나. 주요골자

-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중 “총무국, 기획감사실, 문화공보실”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“기획실, 총무국”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며
- 각 동사무소 업무중 위의 “국, 실, 과” 소관에 관련된 사항을 “실,국, 과” 소관에 관련된 사항으로 함
-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한다는 조항 신설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(실,국의설치) 규정에의한 “기획실,총무국 ” 소관 및 각 동사무소 업무 등 “실, 국, 과 ” 소관으로 각각 개정함이 가하다고 판단되며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상임위원회 간사도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조항 신설이 가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및답변요지 : 없. 음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